

■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5] <개정 2022. 11. 28.>

1일 영양성분 기준치(제6조제2항 및 제3항 관련)

영양성분	기준치(단위)	영양성분	기준치(단위)	영양성분	기준치(단위)
탄수화물	324 g	비타민E	11 mg α -TE	인	700 mg
당류	100 g	비타민K	70 μ g	나트륨	2,000 mg
식이섬유	25 g	비타민C	100 mg	칼륨	3,500 mg
단백질	55 g	비타민B1	1.2 mg	마그네슘	315 mg
지방	54 g	비타민B2	1.4 mg	철분	12 mg
리놀레산	10 g	나이아신	15 mg NE	아연	8.5 mg
알파-리놀렌산	1.3 g	비타민B6	1.5 mg	구리	0.8 mg
EPA와 DHA의 합	330 mg	엽산	400 μ g DFE	망간	3.0 mg
포화지방	15 g	비타민B12	2.4 μ g	요오드	150 μ g
콜레스테롤	300 mg	판토텐산	5 mg	셀레늄	55 μ g
비타민A	700 μ g RAE	바이오틴	30 μ g	몰리브덴	25 μ g
비타민D	10 μ g	칼슘	700 mg	크롬	30 μ g

비고

1. 비타민A, 비타민D 및 비타민E는 위 표에 따른 단위로 표시하되, 괄호를 하여 IU(국제단위) 단위를 병기할 수 있다.
2. 위 표에도 불구하고 영유아(만 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용으로 표시된 식품등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해서는 「국민영양관리법」 제14조제1항의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만 1세 이상 2세 이하 영유아의 탄수화물, 당류, 단백질 및 지방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해서는 탄수화물 150g, 당류 50g, 단백질 35g 및 지방 30g을 적용한다.